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국방반도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 각군,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방반도체산업 관련자(이하 “국방반도체산업 관련자”라 한다)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반도체산업과 국가 반도체산업의 상호 유기적인 보완·발전에 관한 사항
2. 차세대 무기체계 구현을 위한 국방 특화(전용) 반도체 분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이행계획 및 중·장기 국방반도체 확보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중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방부 차관보
 2. 방위사업청 차장
 3.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4. 각군 참모차장 및 해병대 부사령관
- ②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마이일로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의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국방부장관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실무위원회) ①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실무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예산처, 방위사업청 소속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 나등급 이상)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이 소속 군(軍)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각 지명하는 사람
3.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본부장급 직원
4. 국방반도체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실무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④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가 심의·의결로써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조정
 2. 법 제9조에 따른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결정
 3. 국방반도체협의회를 통해 제안된 안건, 국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실무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일반적인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8조(국방반도체 공급망 실태조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방반도체 공급망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실태조사의 시기·취지·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실태조사시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방위산업 침해와 관련한 사항을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법 제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방반도체 관련 정책 수립 및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국방반도체 법령에 따른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 또는 기업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
2. 공개 대상 자료에 대한 정보의 중요도, 보안성 및 공개 범위 검토
3. 자료 제공자의 영업비밀 또는 기술적 비밀이 포함된 경우 당사자의 사전동의 취득

제9조(국방반도체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방반도체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 각 호 정보의 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
2. 국방반도체 정보체계의 개발·운영 및 개선 등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정보체계와의 정보 연계 및 공동활용 지원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정보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 정보체계에 포함된 자료 및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접근권한 관리, 정보보호, 보안대책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반도체 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10조(국방반도체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절차는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른다.

1. 과제 기획 및 선정
2. 수행자 선정
3. 연구개발 수행
4. 과제평가(법 제11조에 따른 신뢰성시험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로 과제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말한다.

1.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연구주체가 공동으로 미래 무기체계에 필요한 핵심 반도체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2. 국방반도체의 시험·평가·검증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사업은 기술수준, 기술발전 추세와의 부합성, 군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수행자 선정 시 제17조를 준용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방반도체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연구개발사업 수행자”라 한다)를 상대방으로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연구개발주관기관”이라 한다)
 2.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연구개발주관기관 외에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연구개발참여기관”이라 한다)
-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또는 반도체 관련 기관·단체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관

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및 협약기간
 2.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책임자 및 참여자
 3. 연구개발사업비의 부담·지급·사용·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장비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신뢰성시험,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평가, 평가 결과의 통지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7.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기술료(이하 “기술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8. 개발성과물의 귀속·활용·이전(移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협약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10. 연구윤리 및 보안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비의 절감이나 사업기간 단축 등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이 변경되어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2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 사정 또는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점검 결과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연구개발사업 수행자가 사업목표 또는 사업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5. 그 밖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협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가 다른 사업에 의하여 이미 달성되어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2.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에 의하여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처음에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연구개발사업 수행자가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2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평가·점검 결과에 따라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사업 중단조치를 한 경우

6.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사업 수행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7. 연구개발사업 수행자가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8. 연구개발사업 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9. 그 밖에 협약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12조(국방반도체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원)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규모·특성,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유형,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자금의 일부만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금의 일부만을 지원받는 연구개발사업 수행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사업비 일부를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받은 자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으로 본다.

④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원”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국방반도체 관련 교육 및 기술이전

2. 국방반도체의 신뢰성 시험에 대한 기술지원

3. 반도체분야 전문인력 양성

4. 국내외 산학연 및 관계기관 협력 지원

5. 그 밖에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국방반도체 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제보한 사람에 대하여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가하거나 위협·협박을 가하는 행위

제14조(국방반도체신뢰성시험 수행)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방반도체신뢰성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방반도체신뢰성시험 장비·시설의 이용 및 정보 제공
2. 국방반도체신뢰성시험의 실시 및 결과 분석
3. 국방반도체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및 자문
4. 국방반도체신뢰성시험을 위한 기준과 기법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국방반도체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반도체신뢰성시험의 구체적인 방법·절차·기준, 시험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15조(국방반도체인증)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방반도체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국방반도체 중 법 제11조에 따라 국방반도체신뢰성시험을 거쳐 기준을 충족한 경우
2. 국방반도체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계 또는 생산한 반도체에 대하여 국방반도체신뢰성시험을 거쳐 기준을 충족한 경우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인증신청을 받으면 심사를 통해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표준 및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국방반도체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방반도체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국방반도체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유효기간 중에 인증 대상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할 수 있고, 정기심사결과에 따라 인증 대상이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인증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방반도체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방반도체인증서를 받은 경우
2. 국방반도체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국방반도체인증서를 받은 국방반도체를 생산, 설계 또는 활용(이하 “생산등”이라 한다)하는 자에 대하여 파산,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국방반도체의 생산등이 불가능한 경우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5항에 따라 국방반도체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반도체인증 신청절차, 심

사방법, 인증결정 및 취소, 인증서 발급 및 표시방법 등 그 밖에 국방반도체인증제도 실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16조(국방반도체신뢰성시험 표준 수립·개정 및 폐지)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방반도체신뢰성시험 표준을 개발 및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방반도체의 군사적 요구성능 및 운용 환경을 고려한 신뢰성시험의 기본 요건
2. 국방반도체의 환경시험, 수명시험, 전기적 특성시험 등 신뢰성시험 항목
3. 시험 항목별 구체적인 시험내용, 조건 및 판정 기준
4. 시험장비, 측정 방식 등 신뢰성시험의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국방반도체의 신뢰성 확보 및 품질 관리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를 생산하는 국내산업기술의 변화·발전 또는 국제표준·인증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국방반도체 신뢰성시험 표준의 실효성이 낮아진 경우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신뢰성시험 표준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국방반도체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방반도체인증증을 받은 국방반도체를 생산·설계 또는 활용하는 자와 군수품의 조달 또는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국방반도체인증증을 받은 국방반도체를 생산·설계하는 자에 대해 법 제9조에 따른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사업 수행자 선정 시 우대

2. 국방반도체인증증을 받은 국방반도체를 활용하여 무기체계 연구개발 또는 양산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대상자 선정 시 우대

3. 법 제14조에 따른 국방반도체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수행자 선정 우대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국방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부여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18조(국방반도체인증제품의 적용 등) ①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의 장 및 방위산업체 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방반도체를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하거나 우선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방반도체인증증을 받은 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인증제품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증제품 목록을 각군 참모총장·해병대 사령관·국방과학연구소장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방위산업체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해병대 사령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인증제품 목록을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전력운영 사업계획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해병대 사령관은 무기체계 양산계약이나 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정비 및 부품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9조(지체상금 감면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 또는 협약상 제재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감면의 사유를 포함한 신청서를 지체상금 또는 협약상 제재를 부과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계약 또는 협약의 성격·규모, 이행의 성실도 및 기술적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감면 여부 결정에 앞서 국방기술품질원의 소속 직원 또는 국방반도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면 절차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20조(지체상금 및 제재의 감면 등)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지체일에 대해 지체상금의 100분의 30 이상 감면
2. 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판단할 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환수 및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환수 및 제재의 100분의 50 이상 감면
2. 법 제13조제3항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체상금 및 제재의 감면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21조(국방반도체사업)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방반도체의 연구개발
2. 국방반도체를 직접 설계 또는 설계서비스 제공
3. 국방반도체 생산 또는 설계자산 위탁 생산
4. 국방반도체 패키징 또는 성능시험
5. 국방반도체 소재 개발 또는 생산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조직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4.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5.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6.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7.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공나노랩센터
8. 그 밖에 국방반도체산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제22조(국방반도체사업자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방반도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방반도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공정 또는 소프트웨어

2. 국방반도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

3. 국방반도체사업 관련 보안관리체계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충족 여부의 판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23조(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절차)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방반도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10일 이내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서류심사 완료 후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의 사업장, 연구시설 등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방반도체사업자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국방반도체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절차,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24조(국방반도체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국방반도체사업자는 지정된 이후에도 제22조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방반도체사업자가 지정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방반도체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이나 현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방반도체사업자는 보안 또는 품질 관련하여 중대한 사항 발생 즉시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사업자가 제1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

제25조(국방반도체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방반도체사업자에 대하여 국방반도체의 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받은 국방반도체 양산에 필요한 공정, 생산장비 및 시험 설비의 구축·개선·유지 또는 활용

2. 국방반도체의 설계검증, 시제품 제작 및 생산을 위한 공정 활용

3.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국방반도체의 무기체계 적용 검증을 위한 시험·평가 및 실증

4. 국방반도체사업 관련 기술보호체계 구축·개선 지원

5. 그 밖에 국방반도체의 국내 기술기반 육성 등을 위한 지원사업

②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국방반도체사업자에 대하여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사업 수행자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방반도체인증의 보유

2. 국방반도체사업 관련 공급망관리체계의 보유
 3. 국방반도체사업 관련 기술보호체계의 보유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필요한 절차, 기준, 방법 및 내용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26조(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의 취소) ① 법 제14조제5항제3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정부에 대한 국방반도체의 공급계약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한 경우
 3. 국방반도체 관련 기술 유출이 발생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위법 또는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반도체사업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위원회에 그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방반도체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정서를 회수한다.

제27조(재정지원 등에 의한 재산의 양도 제한 등) ① 국방반도체사업자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등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의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제공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8조(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①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을 지정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의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의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성과물에 대한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지정 여부를 검토한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보유기관으로부터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3. 기술 환경의 변화, 진보된 국방반도체 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을 지정·변경 또는 지정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보유기관은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의 범위와 내용
2. 지정·변경 또는 지정 해제 요청의 이유
3. 그 밖에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 해제 요청과 관련한 참고자료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요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 해제에 관한 심의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29조(국방반도체산업 관련자의 의견 진술)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방반도체산업 관련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국방반도체산업 관련자 의견 진술서와 그 밖에 의견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 기술의 종류
2. 진술 기회 요청 사유
3. 의견 요지

제30조(국방반도체 전략기술 여부 판정 신청) ①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보유 기술이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판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유 기술의 특성·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2. 신청 대상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IP) 현황
3. 그 밖에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의 판정에 필요한 추가 설명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내에 해당 기술이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신청인에게 판정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판정을 신청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 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술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에

걸리는 예상 기간을 신청인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방반도체 전략기술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국방반도체 전략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보호에 관한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2.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보호 책임자 등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보호업무 전담인력의 지정
3.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보호구역의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4.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의 보호
5.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관리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의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현황
2. 그 밖에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실태조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경우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처리결과

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방위사업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3항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4조에 따라 국방반도체 전락기술의 보호조치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가 소유하는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허락 및 실시계약 체결
2.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활용체계 확립
3.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의 발간·배포
4. 지식재산권 가치의 평가 등과 관련된 업무

②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이하 “기술보유기관”이라 한다)은 국방반도체의 민간부문 확산과 관련 산업기술의 경쟁력 발전을 위하여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3조(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을 국가와 국방반도체산업에 관한 사업에 참여하거나 투자하는 자와의 공동 소유로 하는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그 협약에 명시된 비율의 연구개발비를 부담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자가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방위사업청장과 지식재산권 양도계약을 맺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와 국방반도체산업에 관한 사업에 참여하거나 투자하는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지분은 계약 또는 협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한 자가 법 제17조제4항 본문에 따라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을 허락하려는 경우 허락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내에 다른 공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 국가가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 소유인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을 허락한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다른 공유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지식재산권을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협력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에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요청서를 해당 협력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청의 목적 및 필요성
2. 요청하는 지원의 유형 및 구체적 내용
3. 지원 대상 기술자료, 장비 또는 연구시설의 명칭, 규격 및 수량
4. 활용 기간 및 활용 계획
5. 기술자료, 장비 및 연구시설의 보호 및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6. 그 밖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지원 요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협력기관의 장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요청의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35조(국방반도체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8조제4항의 국방반도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국방반도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민간전문가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하고,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주요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반도체 산업 동향, 기술 수준 및 공급망 현황 등 정보의 공유·전파
2. 국방반도체 분야 인력교류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의 협의
3.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 활성화에 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국방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36조(국제협력의 촉진 등) 법 제18조제6항제7호의 “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방반도체 관련 국제협력 전략의 수립을 위한 연구

2. 국방반도체 핵심소재·부품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우방국과의 공동 비축 및 다변화 협력에 관한 사업

3. 국방반도체 시험·인증 결과의 상호인정을 위한 협력사업

4. 그 밖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7조(국방반도체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의 지원 등)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2. 국방과학연구소장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의 장

② 법 제19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의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시 해당 무기체계에 국방반도체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지원
2. 국방반도체의 기술에 대한 예측조사 및 분석

제38조(권한의 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안의 작성
2.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한다.

부 칙

1. 법 제7조에 따른 국방반도체 공급망 실태조사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방반도체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관리
3.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에 따른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4.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국방반도체신뢰성시험 수행
5. 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에 따른 국방반도체인증 업무
6.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방반도체신뢰성시험 표준개발 및 표준 수립을 위한 연구
7.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표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연구
8. 법 제14조에 따른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을 위한 신청서류 접수, 서류심사, 현장평가 및 제24조에 따른 국방반도체사업자의 준수사항 점검·감독
9. 법 제16조에 따른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10.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 소유 개발성과물에 대한 기술료의 산정 및 징수,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활용·관리
11. 국방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8조제6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지원
12. 법 제19조제9호에 따른 사업
13.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0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방위사업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제2호에 따른 3차 이상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 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국방반도체 전락기술 보호 체계의 구축·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치를 기피·거부·방해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	1,500	2,000	3,000
나.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출입·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	300	500	1,000